

결 정

2018 - 2007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1.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2. 朝鮮日報 발행인 홍 준 호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 문

스포츠서울 2017년 12월 7일자 14면 「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만영스님 황금복돼지」 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2월 7일자 A32면 「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만영스님 황금복돼지」 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12월 12일자 A36면 「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만영스님 황금복돼지」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스포츠서울, 朝鮮日報, 매일경제의 위 적시 광고들은 부자가 되게 하거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황금 복돼지 그림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어느 스님이 그려주는 황금색 복돼지가 시험합격, 매매, 취업, 사업번창, 입찰 등 여러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광고들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며 금전을 피하는 것은 흑세무민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1월 10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담	김용담
위원	정승호	정승호
	장명국	장명국
	이동현	이동현
	장인철	장인철
	강희	강희
	김영모	김영모
	박현갑	박현갑
	박미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